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1
----------	-----

2024. 4. 24.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위원회 대안으로 함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제3조)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종전의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을 기재한[별표]를 삭제하고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존 시설의 폐지,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변경하여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조)
- 나.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반영한 수탁기관 회계감사 감사인 선임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다. 보조금 지원 종사자 연령 상한기준을 삭제하여 각 시설의 유형, 직급, 직위 등 별도 규정을 준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3항)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9.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문성 )

가. 별표 삭제(안 제10조제2항 관련)

- 현행 조례는 제3조(설치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총 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을 별표에 담아 놓았음.
- 별표는 조례 구성부분인 바, 시설을 이전하거나 명칭 등이 바뀔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집행부는 조례 관리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별표를 삭제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로 전환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바, 이는 입법기술상 재량선택의 문제라고 하겠음.

나. 회계감사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안 제6조의2(회계감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p>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②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③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④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그 단서 규정에서 ⑤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 위와 같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다. 보조금 인건비 연령 상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p>제8조(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p> <p>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p>	<p>제8조(보조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의 연령제한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 형평성 있는 처우조건 마련 등을 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고 있는 실정임.
- 금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라고 하겠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령 기준을 우리 조례와 똑같이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향조정하는 등 개별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조리보조원이나, 데이케어센터의 영양보호사 등과 같이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방식으로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조례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인건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면 개별 특례마련을 통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참고자료 참조)

<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연령 기준 초과 종사자 현황

(2024. 3. 15.기준)

사회복지시설	총 종사자	보조금지원 종사자 (1,763명)			
		만60세 초과자			
		시설유형	시설(개소)	인원(명)	직 렬
118개소	2,037명	계	44	57	
		종합사회복지관	2	5	조리사, 조리보조원
		데이케어센터	2	2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40	50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조리사 등

- 검토하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전국 통일적인 기준 적용을 통한 형평성 확보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인력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연령 기준 초과 종사자 채용 근거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등**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조리사, 취사원, 조리보조원)과 환경미화원은 정년 상한제 적용 기준 예외로 60세 이상 초과자 채용 가능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P.19

**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현상으로 현장 인력 채용 어려움을 반영하여 인건비 보조금 상한 60세 원칙 유지 단, 현장 여건에 따라 65세까지 허용 (신규채용 포함)

- 데이케어센터 야간운영보조금 인건비 지급기준 완화 시행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2457호(2023.09.14.))

**어린이집 조리사 등**

조리원(조리사) 신규 채용시 복지넷, 워크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경우 60세 초과자 채용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현재 근무중인 조리원(조리사)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 없이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P.376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사항

- 인건비 지원기준 :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만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지급

- 202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59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 질 의 : 민간위탁운영하는 구립 시설이 많지 않은가. 최장 위탁하는 기관의 위탁 기간이 수십년에 이르는 기관도 다수인 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의 사유화 수준 아닌가. 인건비 지원 제한 중, 시설장 부분은 제한 규정을 현행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 변 : 오랜 기간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사회시설의 경우 법령에 5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 시, 공고모집 과정을 거쳐 신규위탁처 재위탁에 이르게 된 경우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육사업 안내, 노인복지사업 안내, 종합사업 안내 등의 지침이 있으며, 그 지침에 인건비 지급 제한으로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로 규정되어 있긴 함. 그러나 법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설치자와 그 다음 세대까지는 70세까지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음. 우리 구만 연령 규정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구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모집에도 구인을 못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종사자 연령 제한을 상향하여 65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질 의 : 조례 별표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 고시로 하도록 하는 금번 개정이, 행정 효율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사회복지시설 고시의 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인가 주관 부서인가
- 답 변 :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고시할 예정
- 질 의 : 조례 제5조제6항 위탁법인이 위탁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동일분야 시설 중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 5개소 이내)이 25개에 하나도 없고 강남구 조례가 유일함.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은가

- 답 변 : 현실적인 애로가 있음. 강남구에만 있는 제한 규정으로 행정 추진에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함

## 7. 토론 요지

- 위탁법인이 위탁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동일 분야 시설 중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 5개소 이내)이 현실적으로 업무 추진에 큰 제약이 되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 8. 심사 결과 : “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관련의안번호

제361호

발의일자 : 2024. 4. 24.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실적인 큰 제약이 되는 민간위탁 수탁 기관 수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 2. 대안의 주요내용

-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6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9. ~ 2024. 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계감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u>별표와 같다.</u></p>	<p>제3조(설치 등) ----- ----- -----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③ (생략) <u>&lt;신설&gt;</u></p> <p>④ <u>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u>구청장-----</u> ----- ----- ----- -----.</p> <p>②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③ <u>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u></p> <p><u>&lt;삭제&gt;</u></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위치에 동일 분야의 여러 시설을 하나의 수탁자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1개소로 볼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제6조(지도·감독) ① ---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  
-----  
----- . -----  
-----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계감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제8조(보조금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

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b>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b>					<u>&lt;삭 제&gt;</u>				
연번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 부서					
1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로109길 5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 책과					
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3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56길 11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5	강남구푸드지원센터	강남구 삼성로72길 7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6	강남지역자활센터	강남구 개포로38길 12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사회보 장과					
7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어 르신 복지과					
8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9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강남구 봉은사로24길 70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10	강남70+타운지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0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11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구 봉은사로 332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12	강남실버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13	역삼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곡로27길 27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14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15	대치노인복지센터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제공						
16	논현노인요양센터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17	역삼노인요양센터	강남구 도곡로27길 27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18	대치노인요양센터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19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0	역삼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곡로27길 27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1	압구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53길 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2	대치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3	학수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17길 4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4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언주로70길 1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5	강남노년 케어센터	강남구 노현로136 길 5-8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26	명화데이 케어센터	강남구 광평로51길 49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27	목련데이 케어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28	세심정데 이케어센 터	강남구 노현로115 길 35-1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29	세곡데이 케어센터	강남구 현릉로590 길 68	노인 재가복지서비 스 제공	
30	강남장애 인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603	장애인 상담·사례관 리, 역량강화 및 권 익옹호 지원 등 제 공	장 애 인 복 지과
31	강남세움 복지관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 상담·사례관 리, 역량강화 및 권 익옹호 지원 등 제 공	
32	강남세움 주간보호 센터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 주간보호서 비스 제공	
33	해마을주 간보호센 터	강남구 개포로 617-8	장애인 주간보호서 비스 제공	
34	역삼주간 보호센터	강남구 테헤란로8 길 36	장애인 주간보호서 비스 제공	
35	강남세움 단기보호 센터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 단기거주서 비스 제공	
36	강남세움 근로사업 장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에게 근로기 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 지급	
37	강남세움 보호직업장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 직업재활훈 련 프로그램 및 근 로기회 제공	
38	강남세움 직업훈련 센터	강남구 광평로60길 22	장애인 직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 공	
39	강남구수 어통역센 터	강남구 학동로 343	장애인 수어통역 서 비스 제공	
40	강남구청 소년상담 복지센터	강남구 광평로 144	청소년 전문 상담서 비스 제공	가족 정 책
41	강남청소 년수련관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청소년 취미 및 여 가생활 프로그램 제 공	
42	역삼청소 년수련관	강남구 노현로64길 7	청소년 취미 및 여 가생활 프로그램 제 공	
43	일원청소 년독서실	강남구 개포로116 길 21	청소년 독서문화 진 흥 및 교육문화 프 로그램 제공	
44	역삼다함 깨키움센 터	강남구 노현로64길 7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 그램 제공	
45	청담다함 깨키움센 터	강남구 영동대로 131길 26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 그램 제공	
46	누리봄다 함깨키움 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2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 그램 제공	

47	자곡다함 깨카움센터	강남구 자곡로 100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 그램 제공
48	강남구다 문화가족 지원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정보제공
49	강남구여 성능력개 발센터	강남구 봉은사로 320	여성의 취·창업 지 원, 역량강화 평생 학습 등 제공
50	강남구가 족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교육, 상담, 문화, 지 원 등 가족서비스 제공
51	강남구육 아종합지 원센터	강남구 삼성로72길 7	어린이집과 가정 양 육 지원
52	가 로 수 어린이집	강남구 압구정로18 길 2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3	가 온 어 린이집	강남구 현릉로618 길 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4	강남 데시 양 포 레 어린이집	강남구 광평로34길 5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5	강남 어 린이집	강남구 개포로109 길 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6	개포스타 힐스 어 린이집	강남구 영동대로 1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7	구민회관 어린이집	강남구 삼성로 154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8	논현 어 린이집	강남구 강남대로 124길 6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59	다솔 어 린이집	강남구 개포로 264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0	대청 어 린이집	강남구 양재대로37 길 19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1	대치도담 어린이집	강남구 선릉로64길 33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2	대치 어 린이집	강남구 영동대로65 길 1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3	도곡 어 린이집	강남구 선릉로 217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4	디에이치 자이개포 어린이집	강남구 영동대로 22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5	래미안라 클 래 시 어린이집	강남구 삼성로 65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6	명화 어 린이집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7	목련 어 린이집	강남구 개포로 617-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8	미담 어 린이집	강남구 일원로 11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69	바롬 어 린이집	강남구 언주로164 길 3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보 육  
과

70	방죽 어린이집	강남구 받고개로24길 7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1	보람 어린이집	강남구 남부순환로 397길 19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2	보미나 어린이집	강남구 학동로20길 2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3	산들 어린이집	강남구 자곡로3길 4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4	삼성 어린이집	강남구 영동대로 122길 7-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5	선우 어린이집	강남구 도곡로18길 9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6	선재 어린이집	강남구 삼성로71길 3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7	선혜 어린이집	강남구 선릉로 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8	성아 어린이집	강남구 논현로32길 1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79	세곡나비 어린이집	강남구 자곡로 23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0	세곡연두 어린이집	강남구 자곡로3길 22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1	세곡푸르 지오 어린이집	강남구 자곡로 2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2	세곡햇빛 어린이집	강남구 자곡로 26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3	소담 어린이집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4	수서 어린이집	강남구 광평로 242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5	수연 어린이집	강남구 봉은사로59길 22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6	신동아 어린이집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7	신사 어린이집	강남구 도산대로15길 2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8	신한마리 오 어린이집	강남구 테헤란로30길 27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89	압구정아람 어린이집	강남구 압구정로 31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0	압구정 어린이집	강남구 언주로157길 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1	연북 어린이집	강남구 삼성로135길 42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2	역삼가에 어린이집	강남구 도곡로37길 1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3	역삼 어린이집	강남구 테헤란로22길 4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4	연화 어린이집	강남구 학동로43길 17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5	에 다 숨 어린이집	강남구 현릉로571 길 2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6	예지 어 린이집	강남구 인주로7길 23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7	예향 어 린이집	강남구 개포로22길 87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8	오 르 다 어린이집	강남구 봉은사로73 길 3-4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99	일원 어 린이집	강남구 광평로3길 2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0	자곡 어 린이집	강남구 자곡로 17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1	지혜 어 린이집	강남구 삼성로 1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2	정남 어 린이집	강남구 도산대로56 길 14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3	청 마 을 어린이집	강남구 양재대로55 길 10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4	청수 어 린이집	강남구 압구정로79 길 2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5	초록 어 린이집	강남구 현릉로590 길 63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6	초롱 어 린이집	강남구 삼성로 629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7	포레스트 어린이집	강남구 개포로 264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8	푸른 어 린이집	강남구 자곡로7길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09	한별 어 린이집	강남구 봉은사로82 길 23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0	한빛 어 린이집	강남구 광평로34길 3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1	한울 어 린이집	강남구 삼성로51길 25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2	한티 어 린이집	강남구 영동대로57 길 7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3	해솔 어 린이집	강남구 현릉로590 길 88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4	힐스 어 린이집	강남구 자곡로3길 21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115	강남구청 직장 어 린이집	강남구 학동로 426	취학 전 아동 보호 및 교육 제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8., 2023.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8., 2011. 9. 23., 2014. 5. 2., 2021. 3. 21., 2023. 5. 19.>
2. 삭제 <2023. 5. 19.>
3.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5. 2.>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1. 9. 23.> <개정 2021. 3. 12., 2023. 5. 19.>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3. 5. 19.>

6.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3. 5. 19.>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운영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8., 2023. 5. 19.>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2011. 9. 23., 2014. 5. 2.,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

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3. 5. 19.>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계감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기

준을 준용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삭제 <2023. 5. 19.>

**제8조(보조금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8.>

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2. 18.>, <개정 2014. 12. 26.>

③ 삭제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8.>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